

| | |
|---|--|
| <p>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아울러 타 공사·공단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반면 공사의 책임경영체 확보와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오히려 조례로써 규제를 강화하여 자율경영권을 침해하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상반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규정은 공국적으로 어느 측면이 공사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여도를 제고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 정해져야 한다고 보여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섯째, 본 개정조례안 중 수정 및 자구정리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되는 조문은 - 세13조(이사회) 제3항 단서 규정으로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라고 한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제1항에 의하면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되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지방공기업법에 이와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이사의 감독기관이며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고, 본 규정은 사장신분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장이 임면하는 이사가 아닌 공무원인 비상임이사(당연직)로 하는 것이 적정하며, - 동조 제5항의 이사회 출석 비상임이사에 대한 수당과 여비지급 규정과 관련하여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4조(보수 결정의 원칙) 제3항에 의하면 타 법령에 보수에 관한 규정이 없을 시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봉급, 수당)로 지급될 수 없으며, 지방공기업법에도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조항에 “다만, 공무원인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 규정을 두어야 하고 - 세21조(손익금의 처리) 제1항의 결산결과 이이발생시 각호로 정한 처리순위 중 “2. | <p>사업준비금 적립, 3. 시 일반회계에 납입”은 지방공기업법 제6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 이익준비금 적립, 3. 서울특별시에 이의배당(일반 회계로 납입)”으로 하는 것이 적법하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1항 중 “사업년도 40일 전까지”에 있어 사업년도 다음에 “개시”를 삽입해야 하며, 제29조(회의) 제3항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도감독업무”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로 자구정리를 요함 <hr/>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에 근거하여 '98년 8월 20일 제정되어 '99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는 한시기구로서, 조례제정 이후 위원회운영 현황은 위원장 2인(행정1부시장, 경무부시장 : 공동위원장제)을 포함한 20인으로 구성되어 전재회의 13회, 소위원회의 30회를 개최하였으며, ○ 실업대책본부 및 5개 분과위원회(실업대책, 저소득시민, 생산·일용직, 사무·전문직, 청년·여성소위원회) 구성, 자치구「취업정보은행」설치, 도시정보화추진, 단계별 공공근로사업 추진, 주택경기 활성화대책, 공공근로인력 중소기업체 지원, 공공근로사업 모니터링 등 57건의 안건심의를 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기한을 2000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현재 기업체의 구조조정과 신규미취업자의 배출로 인한 고실업률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실업대책 수립·시행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심의·자문이 필요하며, 실업률이 평균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위원회 활동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hr/>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조례 제3517호 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부칙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
|---|--|